

##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하반기 (2차)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점프업	5월 15일	6월 1일 ~ 6월 15일	7월~8월	9월
	유망기술개발	소부장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 글로벌선도(수출지향형) 內 바이오헬스 연계과제(2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하반기 시행계획(함께-이어달리기)은 별도 공고(6월초 예정)

2.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글로벌선도(수출지향형)은 「성장 촉진과 성과중심 지원체계 개편」 시범 대상으로 과제 신청·접수 이후 <sup>1)</sup>성장성, <sup>2)</sup>잠재력 평가를 진행하며 1개 이상 통과시 선정평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붙임2-1 참조)

※ 반드시 접수마감일까지 안내된 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장성, 잠재력 평가에서 통과하더라도,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1~3]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주요 변경 개선 사항							
	'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수출지향형 (4년, 20억원)	해외진출		글로벌선도 기술개발	수출지향형 (2년, 10억원)		
	경쟁형		글로벌협력형 (5년, 25억원)					
	전략형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국가 전략 기술		도메인특화 시 (2년, 100억원)		
	소부장	시후보물질 (2년, 10억원)						
	민간투자연계	신약/바이오/프라이머 (2년, 30억원)						
시장확대형 (3년, 36억원)	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전략형	구조혁신 (2년, 5억원)					
	일반		소부장 (2년, 5억원)					
시장대응형 (2년, 5억원)	융자연계형	구조혁신	일반(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2년, 5억원)					
	소부장							
	구조혁신							
중점지원분야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124개 전략품목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품목		124개 전략품목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미래혁신 선도	9대 분야, 57개 품목		중소기업전략 기술로드맵		13대 분야, 272개 품목	
		탄소중립이행	8대 분야, 47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137개 품목	
		성장동력 고도화	11대 분야, 60개 품목		초혁신경제분야		3대 분야, 15개 품목	
신디지털 전환		11대 분야, 54개 품목		소부장		9개 분야, 113개 품목		
기타사항		소부장		9개 분야, 113개 품목				
예외적용 (신청, 지원 제외사항)	• <신 설>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벤처투자법」,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창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신 설>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삭 제>		• <삭 제>	
	• 사업신청 관련 서식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비목별 산정기준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신 설>		• <좌 동>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도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해외진출 전략수립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내 "해외진출R&D" 선정과제 연계 지원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초과제 연계지원 확대(선택사항)			

### 3. `26년 지원내용(하반기 2차)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총 156억원 내외(125개 과제 내외)

#### < `26년 하반기(2차) 지원규모 >

내역사업		과제수	예산
글로벌선도기술개발 (107.9억원, 65개)	수출지향형	60개	99.6억원
	접프업	5개	8.3억원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48억원, 60개)	소부장	60개	48억원
합계		125개	156억원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수출지향형 내 바이오헬스(2개, 연계추천)는 향후 별도 안내 및 선발 예정(6월초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분야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지향형, 접프업)	최대 2년, 1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소부장)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소기업(기관)은 총 연구개발비의 35%~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지원자격

\* 반드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1~3] 후 신청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글로벌선도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1.1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lt;매출 및 수출 실적 미작용 기업&gt;</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23년)」</li> <li>②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극특허(등록), 진출희망국가의 국제표준 인증 보유기업,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li> </ul> </li> <li>③ 혁신제품 보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제품,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분야) 자유공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25년~`26년 「도약(Jump-up)프로그램」에 선정되어 R&amp;D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li> <li>- (지원분야) 자유공모</li> </ul> </li> </ul>	붙임① ②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li> <li>-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li> </ul> </li> </ul>	붙임① ②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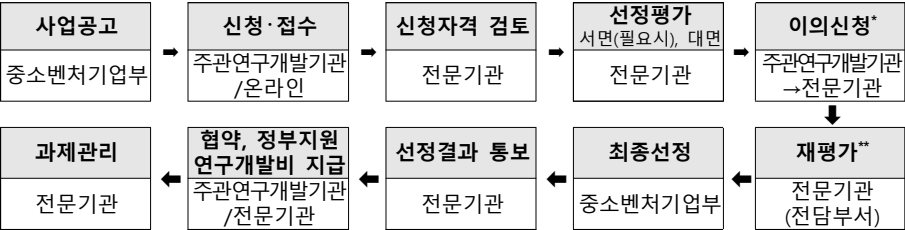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1~3] 참조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7. 기술료 징수관리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9.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3]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